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99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6년 5월 30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5월 31일

2. 제안이유

- 기존 수임기관에 위임한 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에게 권한 환수, 불필요한 위임 사무 삭제 및 기타 위임 근거법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타 기관(한국소방시설협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무를 시장에게 환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함.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방염처리업 관련 사무가 소방시설 공사업 사무에 편입되어 해당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서 삭제함.
-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서 근거법조문을 변경함.
- 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주관부서 명칭 및 순서 변경함.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사항과 서울시 (이하 “시”) 조직개편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치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소방시설업 등록사무 등의 회수(안 별표)

-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이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와 변경 신고 및 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 별표는 기존에 각 소방서장에게 위임해 처리하던 소방시설업의 등록,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업무를 시장이 회수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사항(2015. 7. 1 시행)

개 정 전	개 정 후
<p>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② (생략)</p> <p>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④·⑤ (생략)</p>	<p>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 - - - - .</p> <p>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p> <p>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p> <p>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p> <p>4.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p> <p>④·⑤ (현행과 같음)</p>

- 이는 개정된 법이 과거 소방시설의 등록업무는 시·도지사(소방서 위임)가 수행하고, 소방시설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업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협회에 위탁해 수행하면서 오는 이원화된 절차를 개선해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 현재 서울시내 1,782개 소방시설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방시설업 등록 등의 업무는 시 각 소방서가 연간 3,700여건 이상 처리되는 단순한 민원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시가 직접수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위탁절차를 통해 협회가 관리하고 시가 협회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참고자료).

- 이와 관련해 법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 업무 사무를 시장이 회수하는 개정안에 대해 현재 23개 소방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음.
- 이 밖에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의 등록, 등록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사무도 소방서장으로부터 회수하고자 함.
- 이는 개정된 법 제2조1)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하면서 위 소방시설업 등록 업무 등과 함께 시장이 소방서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시행권한을 회수하고자 함.
- 개정된 법은 방염처리업이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방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의 범주에 함께 포함하면서 현장처리 방염의 관리·감독, 기술자 정기교육,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해당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염처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의 취지도 적절하다고 평가됨.

1) 과거 법에서는 소방시설의 범위에 소방시설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이 포함되었으며, 방염업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 7월 시행된 법 개정시에 방염업을 소방시설업의 범주에 추가하였음.

다. 기타 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별표)

-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각종 위임사무에 인용되고 있는 인용조문의 변경과 지난 해 몇 차례 있었던 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각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표 2〉 인용 법령 조항 변경

주관부서	사무명	개정내용
소방재난본부(예방과)	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표 3〉 위임사무 주관부서 명칭 변경

현행	변경
경제진흥본부(사회적경제과)	일자리노동정책관(사회적경제담당관)
복지건강본부(복지정책과)	복지본부(복지정책과)
복지본부(보건의료정책과,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문화체육관광본부(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본부(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문화본부(체육진흥과)	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
도시안전본부(건설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시안전본부(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의 명칭 변경은 사소하지만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자료>

2015년 소방시설업 (공사, 설계, 감리, 방염처리업) 현황

구분 서별	계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염업
계	1,782	1,175	366	166	75
종 로	43	30	9	4	0
중 부	38	33	1	2	2
광 진	163	92	43	16	12
용 산	31	22	6	1	2
동대문	77	53	13	10	1
영등포	140	93	29	15	3
성 북	40	34	3	1	2
은 평	43	31	4	6	2
강 남	194	113	46	26	9
서 초	184	111	52	16	5
강 서	56	45	5	3	3
강 동	52	35	6	6	5
마 포	77	64	8	3	2
도 봉	18	11	2	1	4
구 로	218	139	54	20	5
노 원	27	22	3	2	0
관 악	41	28	9	2	2
송 파	193	102	58	26	7
양 천	34	27	4	1	2
중 량	36	27	3	1	5
동 작	35	28	5	2	0
서대문	20	15	2	1	2
강 북	22	20	1	1	0

2015년 소방시설업 (공사, 설계, 감리, 방염처리업) 등록업무 처리 현황

구분 서별	계	신규 등록	중요 등록사항 변경			지위 승계	반납·휴업
			소재지·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계	3,873	142	214	124	3,250	11	132
종 로	183	1	7	6	167	-	2
중 부	103	1	8	8	84	1	1
광 진	362	16	16	13	302	1	14
용 산	50	-	1	4	43	-	2
동대문	168	11	8	3	141	-	5
영등포	272	11	17	5	235	-	4
성 북	65	1	3	1	58	-	2
은 평	79	3	2	-	71	-	3
강 남	474	17	24	22	387	1	23
서 초	478	9	20	14	419	1	15
강 서	138	3	5	4	122	-	4
강 동	103	8	5	5	84	-	1
마 포	193	2	6	2	182	-	1
도 봉	18	4	4	-	7	1	2
구 로	451	24	33	12	360	1	21
노 원	45	1	6	5	28	2	3
관 악	62	3	5	2	49	1	2
송 파	463	18	26	13	386	1	19
양 천	26	2	-	-	22	-	2
중 량	45	2	5	1	36	-	1
동 작	44	1	6	3	32	1	1
서대문	22	2	2	1	15	-	2
강 북	29	2	5	-	20	-	2